

### [서식 예]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청구의 소

# 소 장

- 원 고 O O (주민등록번호) OO시 OO구 OO길 OO (우편번호 OOO-OOO)
- 피 고 근로복지공단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 대표자 이사장 △△△

###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청구의 소

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가 20〇〇. 〇. 〇.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# 청 구 원 인

- 1. 산업재해의 발생
  - 가. 원고는 본건 산재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망 배□□의 배우자로서, 산재보험 금을 수령할 수 있는 유족으로 위 배□□의 장례를 치른 자입니다.
  - 나. 소외 망 배□□는 건축도급업자인 소외 ☆☆회사에 목공으로 고용되어 있었고. 위 ☆☆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★★으로부터 주택건축을 수급받은 주식



회사 ◎◎공무점으로부터 다시 위 주택건축에 관한 목공일을 수급받게 되었습니다.

- 다. 그런데 본건 사고일시인 20○○. ○. ○.경 망 배□□는 ★★회사의 위 도급 공사 현장에서 목공일에 종사하고 있다가 때마침 ◎◎공무점의 전기도급공 사관계에 취직을 부탁하러 온 소외 박□□로부터 망치로 동인의 좌측 두부 를 구타당하여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20○○. ○. ○.시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
- 라. 본건 사고당시 위 박□□는 실직한 목공으로 적당한 취직처를 찾고 있던 차에 ◎◎공무점의 전기, 건축도급공사를 전해 듣고, 그 공사에 취직하려고 위현장에 갔던 것입니다. 그런데 현장에 ☆☆회사의 경영자나 실무담당자가아무도 없었던 바, 평소에 잘알고 지내던 위 망 배□□가 공사현장에서 목공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망 배□□에게 위 현장에 취직하고 싶다는 뜻을 ☆☆회사의 경영자나 실무담당자에게 전해주기를 부탁했으나, 망 배□□ 로부터 바라던 대답을 얻어내지 못해 위와 같은 폭행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.
- 마. 그러므로 위 망 배□□는 ◎◎공무점 및 ☆☆회사의 주택건축 업무에 관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.

### 2. 행정처분

- 가.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망 배□□가 업무상 사망한 자임을 주장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유족보상일시금 ○○원 및 장의비 금 ○○원의 각 보험급여를 청구한 바, 피고는 20○○. ○. ○. 원고에 대하여 망 배□□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님을 이유로 보험료지급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.
- 나.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○○. ○. ○. ○○ 심사청구를 하였으나, 20○○. ○. ○.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고, 다시 20○○. ○. ○.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동 위원회로부터도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받아, 20○○. ○. ○. 그 재결서 등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.

#### 3. 결 론



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 배□□의 사망은 업무상재해로 인한 것임이 분명하고, 따라서 위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지급 청구를 기각한 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본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.

#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재결서 등본

1. 갑 제2호증 기본증명서(망 배□□)

1. 갑 제3호증 가족관계증명서(망 배□□)

#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납부서 1통

2000. 0. 0.

원 고 ㅇ ㅇ ㅇ (인)

# ○ ○ 행정법원 귀중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※ 아래(2) 참조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
제출부수	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 큼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 9 ~ 34조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□□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□□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방법 및 기 간	· 항소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0조) ·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6조)		

### 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① 중앙행정기관,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②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.

#### 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